

의안 번호	제3610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4월 08일 김기남, 김인수 의원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4월 14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4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경우 대다수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대형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바, 화재예방 및 대응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- 이에 우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의 설치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시장의 책무 규정(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)
- 나. 화재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5조)
- 다. 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6조)
- 라. 화재예방을 위한 대응매뉴얼의 제작 및 배포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7조)
- 마. 관계인에 대한 권고사항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 규정(안 제8조 및 제9조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7. 심사결과 : **원안가결**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없음

김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기자동차 이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기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충전시설”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전용주차구역”이란 김포시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.
4. “안전시설”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.
5. “관계인”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.

제3조(책무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 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.

1. 충전시설 및 안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
2.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
3.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
4.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)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으며,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, 범위, 대상,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대응매뉴얼의 배포)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.

제8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1.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것
2.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주차장 최상층의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할 것
3. 제2조제4호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영할 것
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,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